

## 노스 마린 수자원 공사

정책: 연체료 및 수도 공급 중단

정책 번호: 6

최초 작성일: 2002

최근 검토일: 2020년 6월 16일

최종 수정일: 2020년 6월 16일

---

### 연락처 정보:

수도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담하려면, 수자원 공사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전화 415-897-4133(월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5: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납기일:

정기 고지서는 격월로(연 6회) 우편 발송되며, 요금은 고지서 발행일('납기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고지서 요금은 납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납부 독촉 고지:

만약 납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독촉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정기 고지서 발송 주기에 한 번씩 납부 독촉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납부 독촉 고지서에는 납기일이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체료:

고지서 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2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납부 계획:

수자원 공사는 체납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까지 기간을 유예하는 납부 계획을 제시합니다. 기간과 최소 납부 금액은 수자원 공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납부 계획과 그 이후의 해당 계정에 대한 청구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추가 연체료, 과태료 또는 수도 공급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수도 공급 중단:

납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지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 상수도의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추가 연체료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 계정의 납기일이 60일을 경과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 수도 공급이 중단될 날짜로부터 늦어도 10일 전에는 수도 공급 중단 고지서가 해당 계정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되며, 만약 주소가 다를 경우, 수도 공급 상수도가 있는 장소('거주자' 수신)로도 발송됩니다. 또한, 수도 공급 중단 고지서는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는 주소지의 눈에 띄는 장소에 고지해야 합니다.
2. 수도 공급 중단 고지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해당 수도 계정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 금액.
  - c. 수도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요금 납부 또는 납부 협의를 완료되어야 할 날짜.
  - d. 연체 고지서에 대한 재검토 및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 e. 연체 요금 납부를 위한 분할 납부 계획 확인 등, 납부 기한 연장 요청 관련 정보.
  - f. 집주인이 해당 수도 계정의 소유자인 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수자원 공사의 직접 거래 고객이 되어 그 이후의 수도 요금을 납부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

#### **수도 공급 중단 예외 사항:**

1. 수자원 공사는 수자원 공사 정책 제6호에 따라 요금 고지서 내용을 검토 중이거나,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2. 수도 계정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요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장 서비스 담당자가 영수증 제시를 요청합니다.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 서비스 담당자는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계정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사무실로 전화하도록 안내합니다. 수도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부 증빙 자료를 제시하거나, 기존 납부액을 대체하도록 재결제를 해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수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a. 수도 계정 소유자나 세입자가 해당 주거지의 거주자에게 수도 공급이 중단되면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일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 b. 수도 계정 소유자가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한 대체 납부 계획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계획서에는 합의 요청이나 단수 고지서를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계정 소유자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c. 수도 공급 지역의 거주자가 계정 소유자인 경우, 해당 거주자가 수자원 공사의 일반적인 요금 청구 주기 내에 요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도 공급 중단이 임박한 가구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연방 사회보장 보조금/주정부 추가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또는 여성·영유아·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영양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수혜자이거나,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인 경우, 해당 계정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수자원 공사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요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i. 조건 3a, 3b 또는 3c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해당 계정 소유자나 거주자는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대체 납부 계획 합의를 할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이 기간은 합의 확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합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해당 수도 계정에서 추가적인 요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ii. 대체 납부 계획이 60일 이상 연체되거나 당월 수도 요금이 6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수자원 공사는 해당 상수도 공급 거주지에 단수를 예고하는 최종 단수 통지서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단수 통지서는 단수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고지되어야 합니다.

**업무 시간 외 급수 재개 및 요금 수납:**

1. 급수 재개 및 요금 수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5:00~오전 8:00 이전 사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수도 공급 담당자는 단수가 진행되는 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미 알려져 있고 단수 목록에 4회 이상 이름을 올린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후 5:00 이후에 급수를 재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수도 공급 담당자가 본인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담당자에게는 해당 대상자와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도 공급 담당자가 동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노바토 경찰국이나 마린 카운티 보안관실(웨스트 마린 지역 담당)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전화 응대 서비스를 통해 상수도 계정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현장 당직 수도 공급 담당자가 도착했을 때 지불할 대금(현금 또는 수표)을 미리 준비해 두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3. 전화 응대 서비스를 위해 현장 당직 담당자가 계정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발생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대상자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급수 재개 수수료:**

수도 공급이 중단된 경우, 해당 지역의 급수를 재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5.00 (월~금, 오전 8:00~오후 5:00)

\$60.00 (저녁, 주말, 및 공휴일)

이 정보는 업무 시간 외의 시간대에 수도 공급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하기 전, 전화 응대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현장 수도 공급 담당자나 수자원 공사 직원이 해당 거주지가 경제적 곤란 상태라고 판단할 경우, 급수 재개 수수료를 현장에서 즉시 받지 않고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고객 위반 사항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

수자원 공사는 미납 사유 이외에 수자원 공사 조례,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도 공급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타 구제책:**

단수 조치와 더불어, 수자원 공사는 수도 요금 미납에 대해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허용되는 다음과 같은 기타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소송 제기 또는 법적 조치, 혹은 미납액을 채권 추심 기관으로 넘기는 방법 등을 통해 체납액을 확보하는 조치. 만약 소송 결과가 수자원 공사에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경우, 수자원 공사는 변호사 비용과 누적된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개정: 2002년, 2006년, 2013년, 2020년